

(分)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12월부터 거슬러 올라가 5년전 즉 1997년 12월분 이후의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1년전에 일본에 와서 건강관리수당 지급인정을 받은 사람(지급기간 5년간)에 대해서는 1997년 12월 분보다 이전 수당이 되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 4** 미지급 수당이 있을 경우는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합니까? 또한 어떤 절차가 필요 합니까?

수당의 지급인정을 받은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끼시의 담당과(별지 )에 연락해 주십시오.

이미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끼시로부터 수당의 지급인정을 받았으므로 다시 새롭게 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본인 확인(구체적으로 신분증명서, 재류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성함과 생년월일을 알 수 있는 것)이나 수첩 및 수당증서를 복사한 것 제출)이나 현재의 주소, 수당을 송금하기 위해 계좌번호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수당 지급인정을 받은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끼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질문 5** 과거 5년간 몇번 일본에 와서 다른 도도부현에서 수당을 지급 받았습디다. 이 경우 미지급 수당은 어느 도도부현에 연락을 해야 합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모든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끼시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미지급 기간이 중복된 경우는 마지막에 인정(認定)을 받은 도도부현, 히로시마시 또는 나가사끼시에서 지급 받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람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 1998년 1월에 일본에 와서 A현에서 2003년 1월까지의 건강관리수당 지급인정을 받고 1998년 3월에 일본을 떠남.
- 2000년 1월에 다시 일본에 와서 B시에서 2005년 1월까지의 건강관리수당 지급 인정을 받고 2000년 3월에 일본을 떠남.

